

#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경영, 김경우,  
김소양, 김제리, 김화숙,  
노식래, 박기재, 이병도,  
이정인, 전병주, 조상호,  
최 선, 홍성룡 의원(14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,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저임금,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.
- 특히, 장기요양요원들이 종사하는 돌봄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용자에게 밀착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, 또한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1대 1로 고립되어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특성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음.
- 좋은 돌봄 인증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증제로, 장기요양기관이 좋은 돌봄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에 종사자 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,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좋은 돌봄 인증기준을 정비하고, 일부 내용을 수정함. (제8조의2제1항 수정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.

1. 기관의 시설환경, 인력운영,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,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
3. 종사자의 근로조건,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8조의2(인증기준) ① <u>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, 시설 안전성, 재무건전성, 이용자 만족도,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8조의2(인증기준) ① <u>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.</u></p> <p><u>1. 기관의 시설환경, 인력운영,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,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종사자의 근로조건,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